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0호 2022. 6. 30.(목)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165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2-1174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협조(하천수 사용에 따른
하천점용 기간연장) 22

고성군 고시 제2022-120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9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

고성군 고시 제2022-121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2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

고성군 고시 제2022-123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2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7

고성군 고시 제2022-12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9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165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2년간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에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 삭제(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우 5294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전화: 055-670-4663, FAX: 055-670-46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준대규모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p> <p>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u>준대규모 점포</u></p> <p>2. ~ 4. (생략)</p>	<p>제1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u>준대규모점포</u></p> <p>2. ~ 4.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존속기간)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으로 한다.</u></p>	<p><u><삭 제></u></p>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현행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핸드폰:	
대 표 자 명			(남, 여)

2. 계좌정보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3. 단말기정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4. 결제방식(모두 신청 가능)

바우처 카드 , 쿼알코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 하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핸드폰:	
대 표 자 명			(남, 여)

2. 계좌정보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3. 단말기정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4. 결제방식(모두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카드 , <input type="checkbox"/> 쿼알코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 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174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군도 내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속차로 길이(별표 1) 규정 완화
 - ‘그 밖의 지역의 경우’의 시설 목록 중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주차 대수 5대 이하는 변속차로 미설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5미터)]

현 행					개 정 안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주차 대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주차 대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20대 이하	10	10	20	15	5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6대 이상 20대 이하	10	10	20	15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3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30	20
51대 이상	20	10	45	20	51대 이상	20	10	45	20

- ‘m(영어)’를 ‘미터(한글)’로 변경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52939)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설과
- 2) 전화: (055)670-2585, 팩스: (055) 670-27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설과 도로담당(전화: 055-670-25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1] (현행)

변속차로의 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20	10	45	15
나. 휴게소, 주유소 등	-	20	10	45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라. 사도, 농로, 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31대 이상	20	10	45	15
바. 주차장, 건설기계주차장,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51대 이상	20	10	45	15
사.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51대 이상	20	10	45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101가구 이상	25	10	45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 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위 표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은 「도로법」을 따른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25	10	50	20
나. 휴게소, 주유소 등	-	25	10	5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0	10	35	20
라. 사도, 농로, 마을진입 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교통용 통로 등	-	15	10	3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 점 등	10대 이하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15	10	30	20
	31대 이상	20	10	45	20
바. 주차장, 건설기계주 기,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15	10	30	20
	31대 이상	20	10	45	20
사. 공장, 숙박시설,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20대 이하	10	10	20	15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30	20
	51대 이상	20	10	45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	10	40	20

	100가구 이하				
	101가구 이상	30	10	5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위 표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은 「도로법」을 따른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후)<2022.00.00.>

변속차로의 길이(제3조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20	10	45	15
나. 휴게소, 주유소 등	-	20	10	45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라. 사도, 농로, 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이상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31대 이상	20	10	45	15
바. 주차장, 건설기계주차장,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51대 이상	20	10	45	15
사.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21대 이상 50대 이하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51대 이상	20	10	45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15	10	직접식 가속차로 20	
	101가구 이상	25	10	45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 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다. 적용기준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위 표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은 「도로법」을 따른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25	10	50	20
나. 휴게소, 주유소 등	-	25	10	5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0	10	35	20
라. 사도, 농로, 마을진입 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교통용 통로 등	-	15	10	3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 점 등	10대 이하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15	10	30	20
	31대 이상	20	10	45	20
바. 주차장, 건설기계주거 장,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15	10	30	20
	31대 이상	20	10	45	20
사. 공장, 숙박시설,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5미터)			
	6대 이상 20대 이하	10	10	20	15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30	20
	51대 이상	20	10	45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0	10	40	20
	101가구 이상	30	10	5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 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다. 적용기준

- 1) 위 표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은 「도로법」을 따른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내 도로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도로 구조를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내 도로의 교통 안전과 도로 구조를 보전 및 유자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건설과장 조호철

참 고**관계법령(발췌)**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6. 21.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2-06호
2. 하천의 명칭 : 미룡천(지방하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최치영(고성착한새우)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6 덕진5차 휴먼빌(502/10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육상양식장(새우) 공급용호스 설치에 따른 하천점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6-13번지 일원
 - 면적 : 일시점용 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 일시점용 : 2022년 6월 22일 ~ 2027년 6월 21일(5년마다 연장신청)
7. 문의처 :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2-120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9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09-5호(2009. 1. 8.)로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929-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9호선)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6. 21.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9호선)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9호선) 변경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9	8	국지 도로	2,826	소로2-147 (대가면 송계리)	영현면 연화리 산12-1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09-5호 (2009. 1. 8.)	
변경	소로	2	89	8	국지 도로	2,826	소로2-147 (대가면 송계리)	영현면 연화리 산12-1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09-5호 (2009. 1. 8.)	일부구간 선형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89	소로2-89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연장: 2,826m(변경 없음) - 폭원: 8m(변경 없음)	○ 대가면 송계리 929-1번지 일원의 기개설된 군도 17호선의 현황도로 선형 반영을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2-121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2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09-5호(2009. 1. 8.)로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16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2호선)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6. 22.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2호선)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82호선) 변경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6,685	중로1-19 (국도77호선)	동해면 외산리 675-11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09-5호 (2009. 1. 8.)	
변경	소로	2	82	8	국지 도로	6,685	중로1-19 (국도77호선)	동해면 외산리 675-1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82	소로2-82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연장: 6,685m(변경 없음) - 폭원: 8m(변경 없음)	○ 동해면 외산리 163번지 일원의 기개설된 군도13호선의 현황도로 선형 반영을 위해 금회 군계획 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2-123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2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09-5호(2009. 1. 8.)로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346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2호선)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6. 23.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2호선)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2호선) 변경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1,940	중로1-25 (국도14호선)	소로2-134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09-5호 (2009. 1. 8.)	
변경	소로	2	72	8	국지 도로	1,940	중로1-25 (국도14호선)	소로2-134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72	소로2-72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연장: 1,940m(변경 없음) - 폭원: 8m(변경 없음)	○ 회화면 삼덕리 346번지 일원의 기개설된 군도6호선의 현황도로 선형 반영을 위해 금회 군계획 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2-12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수남리 16-2	고성읍 남포로80번길 46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80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2	고성읍 신월리 산126-7	고성읍 신월로 221-79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3	고성읍 신월리 산196	고성읍 신월로 129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4	삼산면 미룡리 1248-37	삼산면 두포로 200-44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여 두포로로 명명	
5	개천면 좌연리 1197-3	개천면 좌연1길 301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개천면 좌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6	구만면 화림리 872	구만면 화림5길 46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 화림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7	회화면 녹명리 214	회화면 녹명길 221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녹명리)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8	동해면 용정리 산75-11	동해면 용정1길 363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용정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9	동해면 봉암리 726-3	동해면 봉암3길 42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봉암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10	거류면 당동리 87-3	거류면 당동6길 119-21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당동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11	고성읍 대독리 418	고성읍 불암길 102-56	2022.06.30.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읍의 자연마을인 불암마을의 지명을 활용한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거류면	당동6길 119-2	2022.06.3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